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036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성 검사기관의 신규 지정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1.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안전성 검사기관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품목					
한국기계전 기전자시험 연구원 (대표: 안성일)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9	2023.12.21.	제2023-3호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807 770 983 826">품목</th> <th data-bbox="983 770 1474 826">세부품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07 826 983 1603"> ① 재사용전지 모듈 ② 재사용전지 시스템(정 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td> <td data-bbox="983 826 1474 1603"> ① 재사용전지모듈 ② 재사용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비교: 1. 재사용전지모듈은 시행규칙 별표 7의2 비고 가목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되어 재사용전지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일상생활에서 전지(재사용전지시스템 포함)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재사용전지모듈은 재사용전지시스템으로 간주하며,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td> </tr> </tbody> </table>	품목	세부품목	① 재사용전지 모듈 ② 재사용전지 시스템(정 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① 재사용전지모듈 ② 재사용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비교: 1. 재사용전지모듈은 시행규칙 별표 7의2 비고 가목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되어 재사용전지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일상생활에서 전지(재사용전지시스템 포함)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재사용전지모듈은 재사용전지시스템으로 간주하며,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품목	세부품목								
① 재사용전지 모듈 ② 재사용전지 시스템(정 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① 재사용전지모듈 ② 재사용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비교: 1. 재사용전지모듈은 시행규칙 별표 7의2 비고 가목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되어 재사용전지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일상생활에서 전지(재사용전지시스템 포함)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재사용전지모듈은 재사용전지시스템으로 간주하며,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